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이재강 · 박지원 · 김우영
박용갑 · 윤후덕 · 양문석
김태선 · 조정식 · 이주희
이해민 · 정진욱 · 진성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「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에 외국인의 원지음(原地音)을 한글로 표기하되,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.

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,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 · 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(原地音)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 · 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(原地音)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, 그 외국인

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원지음(原地音)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
조 제3항 신설).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제2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(原地音)을 한글로 표기한다. 다만,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(原地音)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9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성명의 한국식 발음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) ① · ② (생 략)	제9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제2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(原地音)을 한글로 표기한다.</u> <u>다만,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(原地音)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.</u>